# 인권은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는가?

문세연 인턴기자

흔히들 인권이라 하면, 사람들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떠올린다. 그렇다면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성별, 인종, 나이, 국적, 장애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가 자유롭고 평등한 것을 의미하며,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헌법을 통해서 인권을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고, 성별, 종교,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일부 민주주의 국가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평등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일반적인 인권의 범위를 넘어선 허용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무분별한 인권 개념의 확장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성소수자들의 인권 신장의 일환으로 동성 간 성행위 및 결혼 등을 합법화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생물학적 성별을 부정하고 후천적으로 개인의 성별을 결정하게 되는 문제점이 야기되었다.

차별금지법 도입은 성소수자의 인권 신장에는 긍정적이었을지 모르나 생물학적으로 성

별을 구분하는 행위마저 차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등 일반적인 사회적 가치와는 더 큰 괴리를 일으키고,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차별이라는 이유로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여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실제로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하는 경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처벌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학교에서는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성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시기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한다는 미명 아래 성별은 남과 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요하며, 남과 여로 성을 구별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일들은 비단 다른 나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또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고, 사회의 질서를 혼란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또한,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함으로써 다수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 국가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